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99
----------	-----

제 출 일 : 2026. 3. 5.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 조문의 모호한 주체를 명확히 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
 - 기획조정실장 → 민원총괄 업무담당 국장(안 제3조제2항)
 - 감사관, 의회법무과 → 감사부서의 장, 법무부서(안 제3조제3항)
- 조문의 모호한 주체 명확화
 -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주체를 “관련부서”로 규정(안 제10조제1항)
 - “회의 일정을 통지받는” 주체를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규정(안 제10조제3항)
- 수당 지급 대상 정비
 - “위촉직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 → “위촉직 위원”(안 제13조)

3. 참고사항

- 부서협의결과
 - 1) 협의기간 : 2025. 12. 18. ~ 2025. 12. 22.
 -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 2026. 1. 8. ~ 2026. 1. 28.(20일)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양주시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를 “남양주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민원총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관, 의회법무과”를 “감사부서의 장, 법무부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이해관계인 참여 등)”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을 “민원인”으로, “회의”를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로 한다.

-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중 “위원,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민원여권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민원여권과 김혜정
	담당·팀장 직위·성명	민원행정팀장 예지원
	담당자 성명·전화	임송이 (031-590-426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u>남양주시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u>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기획조정실장</u>으로 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및 관계 부서의 장, <u>감사관, 의회법무과 소속 변호사</u>로 한다.</p> <p>④·⑤ (생략)</p> <p>제10조(<u>이해관계인 참여 등</u>)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민원 사항과 관련된 소관 부서의 서류 등을 열람</u></p>	<p>제1조(목적) ----- ----- ----- <u>남양주시</u> ----- ----- -----.</p> <p>제3조(구성) ① ----- ----- <u>이하</u>-----.</p> <p>② ----- <u>민원총괄 업무담당 국장</u> -----.</p> <p>③ ----- ----- ----- <u>감사</u> <u>부서의 장, 법무부서</u>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u>의견청취 등</u>) ① 위원장은 <u>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u></p>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 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
----- 민원인 -----

-----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
에게 회의 -----
-----.

-----.

제13조(수당 등) -----
----- 위원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재정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주요 개정 내용이 재정 변동을 수반하지 않음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안 제3조제2항, 제3항) 정비
- 회의 절차 관련 모호한 주체에 대한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제3항)
- 수당 지급 대상 정비(안 제13조) : 이해관계인 등 삭제

4. 작성자

행정국 민원여권과장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민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5A경기남양096)

1. 민원담당관-23267(2025.12.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5A경기남양096) 1부. 끝.

남 양 주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복지국장 전일 2025. 12. 23.
일련번호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42672 (2025. 12. 23.) 접수 민원담당관-23408 (2025. 12. 23.)

주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4층 (규격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690-3985 팩스번호 031-690-2289 / yhls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동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남양096		
정책명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민원담당관	
	담당자명	임현정	전화번호 031-590-824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2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민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 주체 정비○ 당연직 위원 부서 명칭 체계 정비○ 수당 지급 대상 정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민원담당관장 귀하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민원담당관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5-94)

민원담당관-23114(2025.12.18.)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감 사 문경석

주무관	김주현	청렴윤리팀장	연가	감사관	2025. 12. 22.	문경석
협조자						
시행	감사관-14493	(2025. 12. 22.)	접수	민원담당관-23309	(2025. 12. 22.)	
주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공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690-4719	팩스번호	031-690-2079	/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5-남양주-94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민원담당관	입 안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6급 임현정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5. 12. 22.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p>2025년 12월 22일</p> <p>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p>			
민원담당관 귀하			

붙임4 규제심사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민원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1. 남양주시 민원담당관-23114(2025. 12. 18.)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 절차 및 참석 위원 수당 지급 범위 정비 등 우리 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끝.

의회법무과 **촬영**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2025. 12. 19.	임기영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16275	(2025. 12. 19.)		집수	민원담당관-23198	(2025. 12. 19.)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붙임5 입법예고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민원여권파-405(2026.01.07.)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 8.(목) - 2026. 1. 28.(수) /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의견제출 0건

마. 향후계획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상정 등 입법절차 진행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임승미	민원행정팀장	여지원	민원여권과장	전경 2026. 1. 29. 김혜정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한지혜	의회법무과장	이동규	
시행	민원여권과-2138			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288	팩스번호	031-590-2940	/ debin22@korea.kr	/ 대국민 공개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